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준옥]

목 차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9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19
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4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4. 3.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종두, 박희순, 변상원, 권재경, 이성복, 이홍희)

다. 회부일자: 2017. 4. 7.

2. 개정이유

-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6조)
 - 당초: 출산장려금 및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변경: 출산장려금 및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나.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변경함(안 제9조)

- 당초: 거창군
- 변경: 피보험자(출생아)의 부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2018년도 세입 74,000천원, 세출 74,000천원 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 행정과, 보건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4. 7. ~ 4.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부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자격기준을 완화한 수혜범위 확대와 경제적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효과를 창출하고 또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시행일 : 2015-01-01]

제5조(출산장려금) ① 도지사는 출산일 1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 변경 (거창군 귀속 ⇒ 피보험자)
 - 거창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 관련조문 :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제3항제1호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험 협약업체인 KDB생명(주) 산출자료에 의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 비용		0	0	0	0	0	
세출	군비	74,000	77,000	60,000	92,000	103,000	
세입	군비	74,000	77,000	60,000	92,000	103,000	

3. 관련 의견

-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만기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등 만기환급금 차액 발생 가능성이 있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전액을 군에 환급조치하고 거창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
 - 2018년도 예산 확보액(예정) : 74,000천원(군비)

작성자 : 거창군 보건소장

〔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4.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4. 7.

2. 개정이유

- 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진 일부 부지에 대하여 구역 내 도로경계면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 명칭을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정리의 구역을 변경함(안 별표1)
 - 김천리 중 일부를 송정리로 변경(27필지 중 16,405㎡)
- 나.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 명칭을 변경함(안 별표2)
 - 지내 ⇒ 갈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제4항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2. 21.~3.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읍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김천리 중 일부를 송정리로 변경하고,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 명칭을 '지내'에서 '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리의 구역을 실정에 맞게 정리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4.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4. 7.

2. 제안이유

- 전국 군(郡)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사항 해결,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명 칭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 나. 구 성 :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현재 74개 郡 참여)
- 다. 주요기능
 - 1)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 2)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 3)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
- 라. 협의회조직 :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 마. 실무협의회 : 안건별 실무부서장으로 구성, 사전검토와 조율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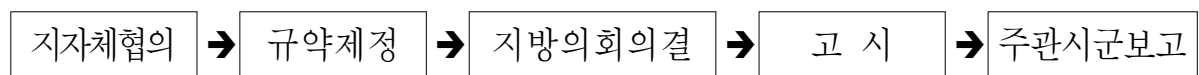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 2)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국민권익위 2016. 10. 31.)

나. 행정협의회 정의 및 설립 절차

- 1) 행정협의회의 정의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
- 2) 설립절차



다. 기타사항

- 1) 임의협의체에서 행정협의체로 적법 구성 및 운영
 - 2) 연간 부담금 : 2,000천원
- ※ 농어촌 관련 정책 발굴, 농어촌간 네트워크 구축, 농어촌 지역 정책포럼 개최, 책자, 홍보물 제작 등 관련 제비용

5. 검토의견

- 가. 이 규약은 전국 군(郡)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과제 해결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4. 3.

나. 발 의 자: 변상원 의원 대표발의(박희순, 표주숙, 이성복, 강철우, 김향란)

다. 회부일자: 2017. 4. 7.

2. 제정이유

-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 라.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6조)
- 마. 지원 신청 규정(안 제7조)
- 바. 지원 결정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연간 66,000천원 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4. 7. ~ 4.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나.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62호, 2016.2.3.,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09.] , (제정) 2015-07-09 조례 제 40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 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경상남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거창 향교 지원 및 육성에 따른 교육, 행사, 시설 지원에 필요한 비용
- 관련 조문 : 제6조(사업비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66	66	66	66	66	330
세출	국비	0	0	0	0	0	0
	도비	6.6	6.6	6.6	6.6	6.6	33
	군비	59.4	59.4	59.4	59.4	59.4	297
	소계(a)	66	66	66	66	66	330
세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3. 관련 의견

-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인의예지충효를 실천하는 선조들의 사상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역사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교육 및 행사 지원

- 각종 교육 및 전통계승 행사 지원: 66,000천원/연간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4.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4. 7.

2. 제안이유

- 가야문화권 시·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회칙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1) 목 적: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

나. 기능(안 제2조)

- 1)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 2)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3)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 4)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 5)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 6) 기 능: 관광마케팅 공동전략 수립, 관광상품 개발, 관광설명회 개최 등

다. 구성 및 조직(안 제3조 ~ 제7조)

- 1) 거창군·고성군·고령군·구례군·광양시·남원시·달성군·산청군·성주군·순천시·의령군·장수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함
- 2) 협의회 의장은 1명으로 하고 사무국은 의장 시·군에 둠
- 3) 의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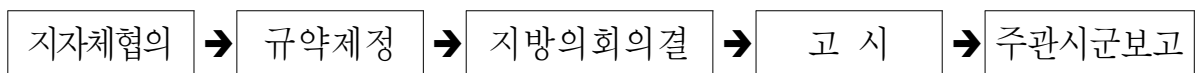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 2)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국민권익위 2016. 10. 31.)

나. 행정협의회 정의 및 설립 절차

- 1) 행정협회의의 정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
- 2) 설립절차



다. 기타사항

- 1) 임의협의체에서 행정협의체로 적법 구성 및 운영
- 2) 시군별 연간 부담금 규모: 8,000천원 정도

5. 검토의견

- 가. 이 규약안은 가야문화권 시군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역량을 집결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 하고자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과제 해결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회의 규약)

협의회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회사항의 조정)

-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회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회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기준)

-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4.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4. 7.

2. 개정이유

- “거창승강기산업밸리”보다 더 포괄적 의미인 “거창승강기밸리”로 용어를 변경하여 대내외 이미지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과 지원취소 및 환수기간을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포괄적 의미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 거창승강기밸리
- 나. 승강기산업체에 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완화(안 제15조제4항)
 - (현행) 7년 ⇒ (변경) 5년
- 다.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기간 완화(안 제16조제2항제6호·제7호)
 - (현행) 7년 ⇒ (변경) 5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3. 10. ~ 3.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승강기산업밸리'를 '거창승강기밸리'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과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용어변경을 통해 거창승강기밸리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의 개정내용에 일치시켜 완화된 것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6.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 기간"이라 한다) 제18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 8. (생략)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④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시장·군수가 보조금 정

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016.12.28. 전부개정)

제1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되기 전

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 8. (생략)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④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군수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4.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4. 7.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16.12.30.)개정에 따라 무료화 등의 사유로 수수료 규정 일부 삭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삭제사항 반영(안 별표)

- 삭제: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 신청, 수산물가공업신고

나. 수수료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 (현행)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추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함)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함)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3. 22. ~ 4.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이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무료화 등의 사유로 수수료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16.12.30.)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2호, 2016.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등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가 무료로 규정되어 있거나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없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등 수수료 징수 건수 또는 징수액이 미미하여 전국적으로 그 수수료 징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별표 제19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8호의 종류란 중 "「남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을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52호,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 제63호, 제72호, 제73호, 제80호, 제104호 및 제1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33호 및 제134호의 종류란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를 각각 "양도·양수신고"로 한다.

별표 제137호의 종류란 중 "변경 신고"를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제138호의 종류란 중 "변경 허가"를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제145호의 종류란 중 "수수료 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2호,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개정 2016. 12. 30.>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지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고 수수료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삭제 <2016. 12. 30.>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1건당 10,000원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	1건당 45,000원

(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4.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4. 7.

2. 개정이유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공유재산의 분할납부의 범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
 - 공유재산 사용료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28조제2항)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30조제7항)
- ※ 법령위임조례(규제완화) 정비과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3. 10.~3. 3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전국 개정현황(1): 강릉시

5. 검토의견

- 가.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분할납부와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개정(2016.7.12)으로 조례에서 행자부 고시로 변경된 조항을 삭제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7호, 2016.2.3., 전부개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수·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익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29호, 2016.8.2., 전부개정]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조문 전문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 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사.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2016.12.28.)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2.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3.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⑦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4. 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4. 7.

2. 제안이유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거창군 휠체어택시 사업 민간위탁
- 나. 사 업 량: 휠체어택시 차량 2대
- 다. 위탁대상 사무
 - 휠체어택시 위탁운영(2대)
 - 그 외 위탁차량 관리 및 차량 운행 서비스 사무 관리
- 라.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위탁기간: 2014. 5. 16. ~ 2017. 5. 15.(3년간)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승차인원	연 식	비 고
중형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74우8590	7명	2011년	* 휠체어리프트 장착
중형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79서1654	7명	2007년	

○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4년도: 1,256명(1일 평균 운행횟수 2.5)
- 2015년도: 1,632명(1일 평균 운행횟수 3.3)
- 2016년도: 2,100명(1일 평균 운행횟수 4.0)

마. 운영계획

○ 재위탁 운영

- 수탁기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지회장 백승모)
- 위탁기간: 2017년 5월 16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 위탁내용: 휠체어택시 운영, 차량관리 및 운행서비스 사무관리 등

바.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오랜기간 동안 본 사업을 운영한 결과 운영자의 축적된 경험과 교통편의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서비스 제공 유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4조

나. 향후일정

- 위·수탁 계약 체결: 2017. 5.
- 위탁 운영: 2017. 5. 16. ~ 2018. 6. 30.

다.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54,000천원

라. 위탁운영 계획안: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가. 이 동의안은 휠체어택시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5.15.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이 경과하여 2017.4.6.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위탁에 적격한 것으로 심의되었고

라. 현재 수탁기관은 노인·장애인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년간 휠체어택시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계속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 제4조 (운영)** 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거창군휠체어택시 민간위탁 운영계획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4조

2. 사업현황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승차인원	연 식	비 고
중형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74우8590	7명	2011년	* 휠체어리프트 장착
중형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79서1654	7명	2007년	

- 위탁사업비: 54,000천원(2017년)

3. 그간의 추진사항

- 수탁기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위탁기간: 2014. 5. 16. ~ 2017. 5. 15.(3년간)
 - ※ 2002년 5월부터 계속하여 위탁운영
- 위탁차량: 2대
-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4년도: 1,256명(1일 평균 운행횟수 2.5)
 - 2015년도: 1,632명(1일 평균 운행횟수 3.3)
 - 2016년도: 2,100명(1일 평균 운행횟수 4.0)

4. 위탁추진 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재위탁

- 수탁업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지회장 백승모)
- 수탁업무: 휠체어택시 운영(2대)
 - 관내 교통약자인 장애인·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 위탁차량 관리 및 차량 운행 서비스 사무 관리
- 수탁기간: 2017. 5. 16. ~ 2018. 6. 30.

□ 선정 기준

- 수탁기관의 적정성
- 차량운행의 전문성 및 책임성
- 휠체어택시사업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

□ 위탁범위

- 관내 교통약자인 장애인·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 휠체어택시 유지·관리
- 휠체어택시 이용 홍보
- 기타 관리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2017. 5.
- 위탁운영: 2017. 5. 16. ~ 2018. 6. 30.

5. 소요예산

- 2017년 위탁사업 운영비 54,000천원

6. 기대효과

-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활동제공
- 다양한 복지사업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